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과대포장

목차

Part I . 국내 과대포장 규제

1. 과대포장 규제의 도입 배경 및 목적
2. 국내 과대포장 및 포장재 정의
3. 국내 과대포장 규제

Part II . 국가별 과대포장 규제

1. 일본, 대만, 중국
2. EU, 독일, 프랑스, 영국
3. 미국 (주요 유통사-아마존)

Part III . 결론 및 시사점

1. 국가별 규제 종합
2. 한국·일본·대만·중국 규제 세부 비교 분석
3. 기업의 과대포장 규제 대응 Check List



국내 과대포장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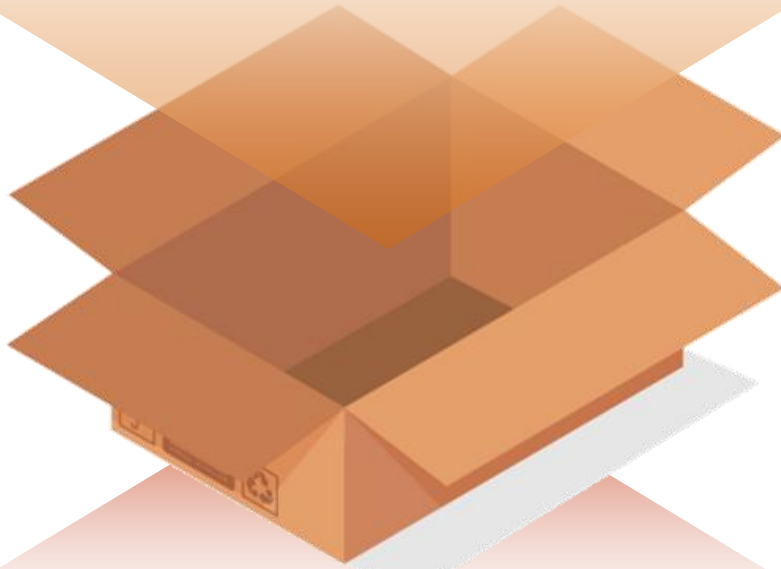
과대포장 규제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포장의 최소화·경량화·간소화를 촉진하도록 도입되었다. 이러한 규제의 목적은 국가마다 동일하지만, 각 국은 자국의 산업 구조와 소비 환경에 맞춰 포장 기준, 방법론, 행정 제재 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국가별 의무 기준과 측정 방식, 제재 체계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였다.

1. 과대포장 규제의 도입 배경 및 목적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그리고 순환경제로의 전환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물류 및 유통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포장재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에는 포장재의 제품 안전과 운송 효율이 더 중시되었다면, 최근에는 환경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규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포장 공간비율과 횡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들이 친환경 포장 혁신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과대포장

제품의 포장공간비율·포장횡수 기준을 초과하여 포장하는 행위¹⁾



규제의 목적

폐기물 감축 및
폐기물 처리의
사회적 부담
감소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만
방지

환경 오염 및
탄소배출량
감축

포장재의
과대 생산 비용
및 구매 비용의
경제적 부담
감소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 국내 과대포장 및 포장재 정의



한국

과대포장¹⁾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상한을 넘긴 포장

단위제품²⁾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포장재를 씌운 횟수에 따라
몇 차 포장인지 구분)



1차 포장



2차 포장

종합제품²⁾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닌 항목
1.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2. 소량 (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 (증정품)
3.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

일회용 수송포장³⁾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
(이외 수송을 목적으로하는
제품포장에는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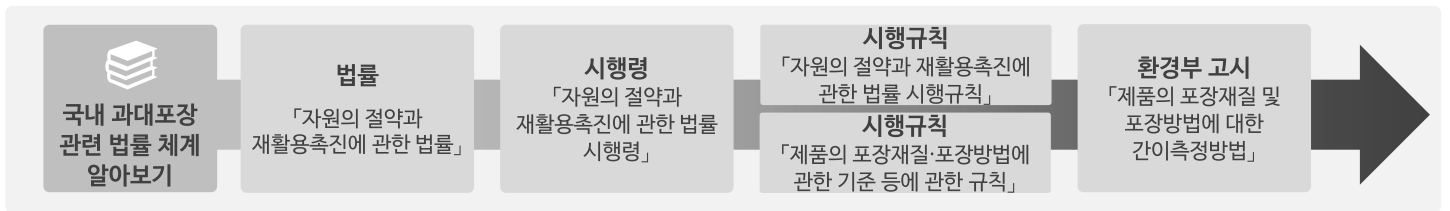
※ 완충재를 넣은 공간은
빈공간으로 구분

1)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2)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3
3)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3. 국내 과대포장 규제

국내에서는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을 기반으로 폐기물 감축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규제 집행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를 수치적으로 규제한다. 과대포장 규제에 포함되는 제품군은 화장품류를 포함한 음식료품, 세제류, 의약품류 등 상당히 포괄적이다. 나아가, 2026년 4월 30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수송 포장재에서도 규제가 적용되어, 단순 제품 포장재 뿐 아니라 수송용 포장재까지 규제 대상이 되었다.

구분	자원재활용법	근거법률															
대상 제품	✓ 화장품류 및 음식료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7조															
포장방법 의무기준 ¹⁾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기준</th> <th>포장공간비율</th> <th>포장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단위 제품</td> <td>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td> <td>15% 이하</td> <td>2차 이내</td> </tr> <tr> <td>그 외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td> <td>10% 이하</td> <td>2차 이내</td> </tr> <tr> <td colspan="2">종합제품</td> <td>25% 이하</td> <td>2차 이내</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공간비율 : 포장재의 부피에서 제품의 부피를 제외한 빈공간의 비율을 의미 포장횟수 : 겹포장·속포장·날포장 같은 명칭 대신, 포장재가 제품을 완전히 감싸는 횟수로 단순하게 산정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 제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외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25% 이하	2차 이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 제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외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25% 이하	2차 이내														
방법론	$\text{포장공간비율} = (\text{포장재 부피} - \text{제품 부피}) / \text{포장재 부피}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 부피 : 내측 기준(길이, 폭, 높이)으로 산정 제품 부피 : 완충/보호를 사용하는 경우, 길이, 폭, 높이에 각 5mm를 가산하여 산정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2															
행정 제재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0조, 별표 8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규제²⁾가 시작되었습니다!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30일 이후부터,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 포장에 대해서도 포장 방법 준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1회용 수송 포장	50% 이하	1차 이내

-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 또는 평균매출액이 5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 면제
- 개인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미대상
- 수송포장공간 비율 측정 방법론 별도 존재⁴⁾

잠정적 규제대상³⁾

유통업체 **132만 개**

제품종류 **1천만 개**

1) 화장품 산업에 해당되는 의무 기준만 정리하였으며, 이외 제품에 대한 기준은 근거 법률 참고
 2)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개정, 2024
 3) 환경부, 수송포장 기준, 계도기간 2년간 운영, 2024
 4)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3

국내 과대포장 판단 기준 알아보기

과대포장 산정을 위한 3가지 포인트

1. 단위제품인지 종합제품인지 구분하기!

-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을 구분해야 제품의 종류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위제품 :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
- 종합제품 :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
 - ✓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ml 또는 30g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과 함께 포장된 제품은 종합제품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2. 제품 종류별 기준을 확인하기!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단위제품 - 그 외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25% 이하	2차 이내
수송포장	50% 이하	1차 이내

- 제품의 종류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 ✓ 화장품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 2026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수송포장에 대해서 규제 시행 예정

3. 세부 방법론 알아보기!

- 환경부 고시를 통해 방법론 숙지가 필요합니다.
 - ✓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 포장 :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2¹⁾
 - ✓ 수송포장 :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3²⁾



1)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2
 2) 환경부 고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 측정 방법」 제4조, 별표3

국내 과대포장 이슈 쉽게 해결하기

1. 간이 검사

포장검사 내가 해보기 사이트 바로가기

※ 결과는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의 증빙으로 사용 불가하며,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

포장공간비율 산출 화면

- 제품구분: 단위제품 종합제품
- 받침접시, 완충·고정재 사용유무: 사용 미사용
- 받침접시, 완충·고정재 재질: 종이·골판지·펄프물드 복합합성수지·폴리비닐클로라이드·합성섬유 재질 그 외 기타재질
- 제품의 종류: 단위 제품·종합 제품에 맞춰 화장품류 선택
- 포장길이 (단위:mm): 가로, 세로, 높이, 두께(옆면1, 옆면2,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
- 포장용적 (또는 자체측정 포장용적): 자동계산 mm³ 직접 입력
- 제품길이 (단위:mm): 가로, 세로, 높이, 완충·고정재 사용여부, 개수, 행추가
- 제품체적 (또는 자체측정 제품체적): 자동계산 mm³
- 포장공간비율: %
- 법규기준: % 이하
- 결과: 결과보기 클릭 시, 간이 평가 결과 산출

2. 정식 검사

포장검사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결과는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의 증빙으로 사용 가능, 포장 검사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

단계	주체	주요 내용	세부 절차(포장 검사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	구분	세부 항목	검사수수료(원)
1	신청자	검사 신청	온라인신청/방문접수(전국) 후 제품발송	포장재질	분리배출표시	50,000
					PVC 유해물질	52,000
2	공단	접수	제품 확인 후 수수료 견적서 팩스 발송	포장공간 비율	단위제품	35,000
					종합제품	45,000
포장공기	납부	견적서 확인 후 검사 수수료 납입 (카드결제/계좌이체)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인 경우			44,000
			측정대상 구성품 5개 이상인 경우		57,000	
3	신청자	검사 수수료 납부		포장횟수	단위/종합제품	18,000
4	공단	검사 진행	납부 확인 후 검사 진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성적서	영문성적서	4,000
5	공단	처리 완료	검사완료 후 시험성적서 및 시료 택배 반환처리(착불)		재발급 성적서	2,000



국가별 과대포장 규제

주요 국가별로 제품의 과대포장 규정은 다른 배경과 규제 정도와 산정 방식은 모두 상이하다.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그리고 포장비용비율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적합성 판단을 위해서는 단순 수치 비교를 넘어, 각 화장품 종류별로 정해진 의무 기준과 포장재·제품의 부피를 측정하는 세부 방식도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일본, 대만, 중국 과대포장 규제

일본은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지만, 화장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비용 비율을 일관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과도한 포장재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포장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포장 비용 측면을 고려하여 포장재의 단순화와 경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도쿄 소비자생활조례¹⁾, 오사카 소비자보호조례²⁾

대상 제품

보석·귀금속류 및 미술공예품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 **상품의 소비자 포장**

포장방법
의무기준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비용비율
도쿄	20% 이하	15% 이하
오사카	15% 미만	15% 미만

- 일본 내 과대포장 관련 국가 법률이 부재하여 지방 정부의 정책 도입 여부와 내용에 따라 상이함
-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포장공간비율 뿐만 아니라 포장비용비율까지 제한

방법론
(도쿄 기준³⁾)

$$\text{포장공간비율} = (\text{포장재 부피} - \text{제품 부피}) / \text{포장재 부피} \times 100$$

- 포장재 부피 : 내측 기준(길이, 폭, 높이)으로 산정
- 제품 부피 : 완충/보호재를 사용하는 경우, 길이, 폭, 높이에 각 10mm를 가산하여 산정

$$\text{포장비용비율} = (\text{전체 판매가} - \text{제품 개별 판매가}) / \text{전체 판매가} \times 100$$

- 전체 판매가 : 상품의 총 판매가
- 제품 개별 판매가 : 제품이 차지하는 판매 원가

행정 제재

지방 정부의 지도·권고



1) 商品の詰め合わせ包装適正化要綱

2) City of Osaka, [過大包装基準について](#), 2020

3) 도쿄·오사카 등 일부 도시는 독자적으로 포장공간비율 15~20% 기준 등을 설정하고 개별 방법론을 수립하거나, 아예 구체적 기준 없이 조례만 운영하고 있음. 이에, 일본의 대표 사례로 수도인 도쿄의 방법론을 기준하여 분석함.

대만의 과대포장 규제는 한국 제도와 유사하다.¹⁾ 허용된 포장공간비율은 기본적으로 25%이지만, 단일 소재 포장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35%까지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였다. 품목별 포장횟수는 2차 포장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만

과대포장 제한 규정(Regulation on Excessive Packaging Restriction)²⁾

대상 제품

화장품·과자·주류·가공식품 및 SW디스크

포장방법 의무기준³⁾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화장품, 주류, 가공식품	25% 이하	2차 이내
단일소재 포장인 화장품, 주류, 가공식품	35% 미만	2차 이내

- 대만에서는 과도한 공간비율 뿐 아니라 다양한 소재 사용이 과대포장 요소로 지적되므로, 단일 소재 포장을 장려하기 위해 동일 기준보다 완화된 포장공간비율을 허용

방법론

$$\text{포장공간비율} = \{ \text{포장재 부피} - (\text{제품 부피} \times \text{공간계수}) \} / \text{포장재 부피} \times 100$$

- 포장재 부피 : 외측 기준(길이, 폭, 높이)으로 산정
- 제품 부피 : 제품의 길이, 폭,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
- 공간계수 : 2.0 (화장품 제품 기준)
- 단일소재 포장이란 내용물을 담은 1차 포장을 제외한 포장재가 전부 단일소재인 경우이며, 인쇄/라벨/테이프 제외

행정 제재⁴⁾

- 1차 위반 : 30,000~150,000 신 타이완 달러(원화 약 140만원~700만원⁵⁾) 행정벌금 및 기한 내 개선 조치 미이행 시, 초과 일수만큼 과태료 부과
- 중대 위반 : 1개월~1년 내 영업정지 처분, 또는 폐업처분
 - 1년 내에 두 번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동일한 규정을 계속 위반하는 경우
 - 재활용자원을 규정에 따라 재활용 및 재사용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경우
 - 허위 신청서, 보고서 및 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 기타 관할 기관이 인정하는 상황인 경우



1) 대만 제품 과대포장 제한 안내(안) (Proposed Regulation on Excessive Packaging Restriction), 2005

2) 대만 제품 과대포장 제한 안내(公告限制產品過度包裝), 2005

3) 화장품 산업에 해당되는 의무 기준만 정리하였으며, 이외 제품에 대한 기준은 근거 법률 참고

4) 대만 자원재활용법(資源回收再利用法) 제26조, 2009

5) 1 신 타이완 달러 당 한화 46.6원 기준

중국에서는 공간비율을 제품의 부피가 아닌 내용물의 부피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포장공간비율, 포장비용비율과 포장횟수를 모두 규제한다. 다만, 중국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비용비율, 포장횟수의 단순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일본 또는 한국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중국

GB23350—2021(식품 및 화장품의 과대 포장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요구)¹⁾²⁾

대상 제품	식품 및 화장품			
포장방법 의무기준	단품 순합량(Q) mL 또는 g	포장공간비율	포장비용비율	포장횟수 ³⁾
	Q≤1	85% 이하	20% 이하	4차 이내
	1<Q≤5	70% 이하		
	5<Q≤15	60% 이하		
	15<Q≤30	50% 이하		
	30<Q≤50	40% 이하		
	Q>50	30% 이하		
방법론	<p style="text-align: center;">포장공간비율 = {포장재 부피 - (내용물 부피 x 공간계수)} / 포장재 부피 x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재 부피 : 외측 기준(길이, 폭, 높이)으로 산정 내용물 부피 : 포장 내에 담긴 화장품의 양 공간계수 : 제품에 필요한 공간 계수, 중국 규제 알아보기 페이지 내 수록 <p style="text-align: center;">포장비용비율 = 포장비용 / 제품 판매가 x 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장 비용 : 2차 포장에서 가장 바깥쪽 N 번째 횟수까지의 모든 포장 재료 비용의 합계 제품 판매가 : 상품 제조업체와 판매자가 체결한 계약 판매 가격 또는 상품의 정상 시장 판매 가격 			
행정 제재	제품의 중국 내 수입, 판매 금지			

제품 종류와 종류에 따른 공간계수(k)를 확인하기!

•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공간계수(k)를 내용물의 순합량에 곱해 제품 부피를 산정합니다.




상품단위		k	상품단위		k
일반액상	헤어케어, 스킨, 토너, 폼, 젤류	9.0	분무제	분무제류	5.0
크림유액	스킨케어, 헤어케어, 폼류	9.0	유기용제	유기용제류	15.0
파우더	파우더, 파우더 팩트류	15.0	치약	치약류	5.0
	염모(염색)류	8.0	소량제품	리퀴드 아이라이너, 립 제품류	20.0
	목욕소금류	5.0	극소량제품	순합량이 0.2g/mL 이하 제품	80.0
왁스	왁스류	20.0	종합박스	메이크업 박스(10개 이상 제품)	60.0
가스제품	질소 등 보호가스 함유 제품류	11.0	기타	기타류	12.0


- 보조 전동기구(ex. 전동 브러쉬, 드라이기, 전기면도기 등)를 포함한 제품의 k값은 같은 종류 제품의 1.5배
- 보조 도구(스포이드 펌프, 스킨 롤러, 스페츨러 등)가 포함된 제품의 k 값은 같은 종류 제품의 2.5배

1) GB (国家标准/Guo jia Biao zhun) 중 하나로 강제적으로 지켜야하는 국가표준을 의미하며 한국의 한국산업규격(KS)에 해당하는 개념
 2) 한국무역협회, “중국사업, 국가표준(GB)에 익숙해져야 한다”, 2020
 3) 중국에서는 포장층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활용하나, 보고서에서는 비교분석을 위해 포장횟수로 사용함.

2. EU, 독일, 프랑스, 영국 과대포장 규제

독일, 프랑스, 영국은 포장 최소화 설계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보유하고 있으나, 규제의 정량적 기준과 세부 방법론은 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1)」을 기반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EU는 PPWR을 통해 과대포장 규제를 2025년에 발효한 후 2026년부터 시행하며, 산정 방법론은 2027년 2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도 정성적 기준을 넘어 구체적 산정 방법론을 PPWR에 기초하여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종합제품과 수송용 포장과 개념이 유사한 유럽의 그룹포장과 운송 포장의 경우, 빈 공간을 50%로 이내로 제한하는 방법론이 2028년 2월까지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국은 EU와의 높은 교역 의존도와 정책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PPWR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포장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p>독일 VerpackG 제4조²⁾</p>	 <p>프랑스 Code de l'environnement R.543-44조³⁾</p>	 <p>영국 The Packaging Regulations 2015 SCHEDULE 1 (1)⁴⁾</p>
<p>포장의 부피와 질량은 포장될 상품에 필요한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p>	<p>포장은 충분한 수준의 안전성, 위생성 및 수용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피와 질량으로 제한되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p>	<p>포장은 포장 제품 및 소비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안전성, 위생, 수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부피와 중량이 최소한의 적정 수준으로 제한되도록 제조되어야 한다.</p>

 <p>유럽</p>	<p>EU PPWR 제10조</p>	<p>EU PPWR 제24조</p>
<p>대상 주체</p>	<p>2030년부터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p>	
<p>대상 제품</p>	<p>모든 포장재</p>	
<p>포장방법 의무기준 (방법론)</p>	<p>2027년 2월 12일까지 모든 포장재 대상 최소화 요건 준수 기준과 측정 방법론 처벌 규정 제정</p>	<p>1. 그룹 포장, 운송 포장 또는 전자상거래 포장 대상 포장 공간 비율 50% 제한(방법론 2028년 2월 12일까지 채택 예정) 2. 판매용 포장 대상 최소 수준으로 빈 공간 확보 의무 (빈 공간은 판매용 포장재 총 내부 부피에서 포장된 제품의 부피를 제외한 값을 의미)</p>
<p>행정 제재</p>	<p>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례한 처벌(penalty)이 부과될 예정이며, 제24조 미준수 시 행정 벌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됨 (처벌 규정 2027년 2월 12일까지 제정 예정)</p>	

1)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2025
 2) 독일 포장법(VerpackG), 2023
 3) 프랑스 환경법규(Code de l'environnement), R.543-44조, 2023
 4) 영국 포장규정(The Packaging (Essential Requirements) Regulations 2015), 2025

3. 미국 과대포장 규제

미국은 연방 차원의 과대포장 규제는 정량적인 수치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아마존(Amazon)을 비롯한 주요 유통사들이 자율 인증제도를 통해 포장 효율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아마존의 "Compact by Design" 인증이 있다. 제품 패키징의 무게·부피를 최소화하고 공기나 불필요한 완충재를 제거한 설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에서부터 과대포장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공간비율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부피와 무게 대비 포장 효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한다. 따라서, 국내를 포함한 과대포장 규제에서 제한하는 공간비율 또는 포장횟수와는 관점이 다르다.

US FAIR PACKAGING AND LABELING PROGRAM(FPLP)¹⁾ 제1454조



- 기능적 목적 없이 남겨진 빈 공간(Slack fill) 제제(산정방법론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과대 포장 관련 소송은 주로 소비자 기만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결정함)
- 위반에 대해 최대 10,000달러(한화1천4백만 원²⁾)의 벌금 부과(제45조)



Compact by Design³⁾

소개



[아마존 자체 인증]⁴⁾

제품이나 패키징에서 수자원, 부피, 무게를 줄임으로써 제품 배송 시 탄소 배출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대상 제품

아마존에 등록된 브랜드와 연계되어 있고, 적절한 카테고리에 속한 제품

단위효율 인증기준

제품 유형	단위효율(액체)	단위효율(고체)
스킨, 로션, 세럼, 젤, 오일, 크림	18% 이하	21%이하
바디 워시, 샤워 젤, 클렌저	21%이하	13% 이하
헤어 샴푸	18% 이하	-
헤어 염색약	15% 이하	25% 이하
립밤	-	35% 이하

* 인증 가능한 제품의 모든 목록과 제품별 인증 기준 확인하기

방법론

제품 단위효율 산정식

단위 효율성은 품목 패키지 크기, 품목 무게 및 단위 수와 같은 제품 속성을 사용하여 제품의 단위 효율성을 계산하여 설정된 의무기준보다 낮아야 Compact by design인증을 받을 수 있다.

$$\frac{\text{제품부피(가로}\times\text{세로}\times\text{높이) inches}^3}{\text{단위 용량 oz(fl.oz.)}} \times \frac{\text{제품무게 lbs}}{\text{단위 용량 oz(fl.oz.)}} = \text{단위효율} \left(\frac{\text{inches}^3 \times \text{lbs}}{\text{oz(fl.oz.)}^2} \right)$$

- 제품부피 : 포장된 제품의 부피 inches³
- 제품무게 : 포장된 제품의 무게 pound, lbs
- 단위용량 : 화장품 내용 용량 oz (fl.oz.)

참고자료

[대한화장품협회] 2025 ESG 인사이트 리포트(지속가능한 패키징 인증)에서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정 포장 및 라벨링 프로그램, 15 U.S. Code Chapter 39
 2) 1달러 당 한화 1,400원 기준
 3) Compact by Design Category Thresholds and Additional Information: US, 2024
 4) Amazon, Compact by Design



결론 및 시사점

과대포장 규제는 국가별로 허용 공간비율과 측정 방식, 제한 대상(횡수·비용 비율 등)이 상이하어, 동일 제품이라도 시장마다 준수 요건이 다르다.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포장공간비율·측정 방식·포장횡수·포장비용비율 등 핵심 규제 요소를 분석·대응함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별 최적화된 포장 전략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국가별 규제 종합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은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서 포장방법 의무기준과 방법론이 공개되었다. 그러나 유럽과 아마존에서는 세부사항이 미공개되었거나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규제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규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구분	한국	일본(도쿄)	대만	중국	유럽	미국(아마존)
대상제품	화장품류 및 음식료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등	보석·귀금속류 및 미술 공예품 제외한 상품의 소비자 포장	화장품 ·과자·주 류·가공식품 및 SW디스크	식품 및 화장품	모든 포장재	아마존에 등록된 브랜드와 연계되어 있고, 적절한 카테고리에 속한 제품
포장방법 의무기준 (화장품 제품 기준으로 작성)	포장공간비율 15~25%	포장공간비율 20%	포장공간비율 25~35%	포장공간비율 30~85%	세부사항 공개 전	제품 부피와 무게 대비 포장 효율 산정 (기존 규제와 동등 비교 불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횟수 (미제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횟수 4차 이내		
	포장비용비율 (미제한)	포장비용비율 15%	포장비용비율 (미제한)	포장비용비율 20%		
방법론 (포장공간비율 기준으로 작성)	(포장재 부피 - 제품 부피) / 포장재 부피 x 100 *포장재 부피 산정, 제품 부피 산정 간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포장재 부피 - (내용물 부피 x 공간계수)} / 포장재 부피 x 100	단위 효율 산정식만 존재하며, 포장공간비율 산정식 無	
행정제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방 정부의 지도·권고	3만 신 타이완 달러 ¹⁾ ~ 영업정지 및 폐업처분	제품의 중국 내 수입, 판매 금지	포장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례한 처벌 예정	자발적 참여항목으로 행정제제 無



한국·일본·대만·중국의 규제 세부 비교 분석 가능

1) 1 신 타이완 달러 당 한화 46.6원 기준, 원화 약 140만원

2. 한국·일본·대만·중국 규제 세부 비교 분석

과대포장 규제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동일한 제품이라도 허용되는 공간비율과 이를 산출하는 측정방식이 각기 다르다. 특히 단순 공간비율 제한을 넘어 포장횟수나 포장비용 비율을 규제하는 제도도 존재하므로, 여러 차원의 규제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구분	항목	한국	일본(도쿄)	대만	중국
포장공간비율	규제 기준	화장품 종류 구분	화장품 종류 구분없이 일괄 적용	화장품 종류 구분없이 적용(단일소재 완화 적용)	화장품 종류 구분없이, 순함량 기준으로 적용
	공간비율 허용수치	10~25%	20%	25% (단일소재 적용시 35%)	30~85% (50ml를 초과하는 경우 30%)



화장품의 종류, 순함량, 소재 등에 따라 국가별 허용 포장공간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50ml 크림의 경우 한국에서는 10%이지만, 중국에서는 40%로 30%p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다.

측정방식	포장재 부피 측정 기준	내부 (포장재 두께 10mm까지 허용)	내부 (포장재 두께 제한 없음)	외부	외부
	제품 부피 측정 기준	외접하는 직육면체 (완충재 사용시, 방향별 5mm 가산하여 산정)	외접하는 직육면체 (완충재 사용시, 방향별 10mm 가산하여 산정)	외접하는 직육면체 x 공간계수 (화장품의 공간계수 2)	내용물 x 공간계수 (공간계수가 9~80까지 화장품 종류에 따라 적용)



부피 측정 기준에 따라 공간비율 산정 결과가 달라진다.
포장재 부피를 외부에서 측정하고, 제품 부피에 큰 공간계수를 곱하는 중국과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측정방식이 엄격하다

포장제한	포장 횟수	2차 이내	X	2차 이내	4차 이내
	포장 비용 비율규제	X	15%	X	20%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포장 횟수와 비용 비율 제한이 있다.
특히, 일본과 중국에는 공간비율 뿐만 아니라 포장재 비용 비율 제한까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행정제재	최대 300만원	지방 정부의 지도·권고	과태료 한화 140만원~영업정지 및 폐업처분 가능	제품의 중국 내 수입, 판매 금지
----	------	----------	--------------	-----------------------------	--------------------



공간비율, 포장횟수, 포장비용의 정량적 수치와 더불어 행정제재가 해당 규제의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대만의 경우 공간비율 수치나, 측정방식이 한국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지만, 기준 미준수 시, 최대 영업정지나 폐업 처분까지 가능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3. 기업의 과대포장 규제 대응 Check List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과대포장 규제에 대비하려면, 먼저 각 국가별 필수 점검 항목을 체계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포장공간비율, 측정방식, 포장횟수나 포장비용비율 요건 등 핵심 규제 요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면, 향후 해외시장에서 구체적인 과대포장 기준이 공개될 때 신속하게 추가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를 통해 규제 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 시장별 요건에 맞춘 포장 최적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의 과대포장 규제 대응 10대 Check List!

구분	항목	내용
포장공간비율	규제 기준	1. 화장품 종류별 기준인지, 화장품 종류가 아닌 기준(순함량, 단일소재 등)이 있는지 확인
	공간비율 허용수치	2. 공간비율이 허용되는 정량 수치를 통한 규제 강도 확인
측정방식	포장재 부피 측정 기준	3. 포장재 측정 내/외부 기준 확인 4. 포장재의 두께 제한 여부 확인(한국의 경우, 10mm로 제한)
	제품 부피 측정 기준	5. 제품 부피 측정 기준 확인(완충재 사용 여부에 따른 5~10mm 가산한 부피로 인정하는 경우와 공간계수를 곱하는 경우 등 국가별로 다양)
포장제한	포장 횟수	6. 가능한 포장 횟수 확인 7. 포장 횟수 별 공간비율제한이 적용되는지 확인(중국의 경우 1차 포장에 대해서는 공간비율 제한 미적용)
	포장 비용 비율규제	8. 전체 판매가 대비 포장 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 확인
기타	행정제제	9.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및 폐업 처분까지 다양한 리스크 확인
	국가별 특징	10. 중국은 내용물을 기준으로 공간비율을 제한하고, 대만에서는 단일소재 제품을 장려하기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별 특징 파악 필요

국내 과대포장 주요 Q&A¹⁾

● Q1. 제품이 2개 이상 포장되더라도 단위제품이 될 수 있나요?

- ✓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소판매단위' 개념입니다. 제품이 2개씩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는 상품이라도, 각각을 1개씩 별도로 판매하지 않는다면 해당 제품은 단위제품으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단위제품이 2개 이상 함께 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종합제품으로 구분됩니다.
- ✓ 화장품의 경우, 포장공간비율 기준이 차등 적용되어 단위제품은 1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로 종합제품에 더 여유 있는 포장공간이 허용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종합제품으로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합제품 포장검사를 의뢰할 때는 각 구성품이 실제로 별도 판매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Q2. 단위제품의 최소판매단위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 **실제 매장에 진열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도 최소판매단위로 인정됩니다.**
- ✓ 간단히 말해, 독립된 바코드를 보유하고 판매되는 제품을 단위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정품은 포함이 안됩니다.

● Q3.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하여 포장기준 위반 시 기존 재고 소진 후 신규 부자재 변경이 가능한가요?

- ✓ **법적 포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 따라서 제품 출시 이전 단계에서 포장검사를 의뢰하여 사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Q4. 포장검사 명령은 연간 몇 회 진행되며, 중복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 **포장검사 명령은 지자체에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진행됩니다.** 과대포장 점검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정확한 빈도는 확정하기 어려우나, 최소한 설날·추석 등 선물세트 유통량이 증가하는 명절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 **포장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제품의 경우,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제조·수입한 제품에 한해서는 같은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포장검사를 명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처분 주체인 지자체와 법률해석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Q5. 수송포장은 택배포장만을 의미하나요?

- ✓ 네, 수송포장은 택배포장으로 통용됩니다.



1) 한국환경공단, 화장품 자원순환제도 설명회_질의응답(2022)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https://kcia.or.kr>

2025 대한화장품협회 지속가능위원회



Graphics by Freepik

대한화장품협회의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2025는 Deloitte의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화장품협회 회원들을 위한 ESG 관련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ESG 관련 규제 내용의 경우, 2025년 10월까지의 최신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인증기준, 모범사례, 당국의 지침 및 해석 등 규제환경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 환경의 변화·발전에 따라 장래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